7. 기사환국과 송시열의 축출

한편 해를 넘겨 1688년(숙종 14년) 10월 28일(양력 11월 20일)에 숙종이 득남을 하게 되었다. 부인인 인현왕후에게는 오랫동안 아들 소식이 없었으나 대신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후일의 제20대 임금 경종(景宗, 재임 1720-1724)이다.
왕자가 태어나 10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689년(숙종 15년) 1월 10일, 숙종은 관료들을 대거 불러들여서 왕자의 명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했다.

"나라의 근본을 정하지 못하여 민심이 매인 곳이 없으니, 오늘의 계책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만약 선뜻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관망만 하고, 감히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
이어서 "오늘 여러 대신에게 묻는 것은 바로 왕자의 명호(名號)를 정하려는 일이다."라고 하여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조판서 남용익이 이렇게 건의했다.

"전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의외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궁(中宮, 인현왕후)께서 춘추(春秋, 나이)가 지금 한창이시고, 다른 날의 일을 알 수 없으니, (즉 앞으로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역자주) 갑자기 이런 일을 의논하는 것은 어찌 너무 급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는 신중하게 하소서. 전하께서 신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조판서 유상운(柳尙運)도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왕자를 두시어 신하들과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생겼습니다. 다른 날에 중궁(中宮)께서 생남(生男)의 경사가 없으면, 국본(國本)은 자연히 정하여질 것입니다. 어찌 명호(名號)를 정하지 않는다고 민심이 흔들리겠습니까?"

이에 병조판서 윤지완(尹趾完)도 이렇게 건의했다.

"남용익의 말이 옳습니다. 한(漢) 나라의 명덕 황후(明德皇后)는 늙어서야 비로소 장제(章帝)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로부터 정궁(正宮)을 중하게 여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정궁(正宮, 인현왕후)에게 사자(嗣子, 왕자)가 없다면 국본(國本)은 저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대사간 최규서(崔奎瑞)도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 춘추(春秋, 연세)가 아직 한창이시고 왕자께서 탄생하신 지 겨우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 이처럼 서둘러 명호(名號)를 정하려 하십니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뒷날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며,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큰일을 물으시면서 벼슬의 진퇴(進退)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시니, 전하께서 아랫사람을 대접함이 또한 너무 박하십니다."

왕자 명호를 정하려고 하는데 반대의견을 낼 사람은 먼저 사표를 쓰라는 임금의 처사가 박하다고 하면서 새 왕자를 미리 왕세자로 정하기 전에 정궁인 인현왕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관료들도 명호 정하는 일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며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은 이러한 신하들의 의견에 대해서 "인조 임금 때에는 세자 책봉을 할 때 2품 이상의 관료들이 모여 회의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옛날의 가르침에 이르기를, '불효(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사(後嗣)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라고 하였다. 내 나이 거의 30이 되도록 후사가 없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왕자를 두었는데, 지금 내가 명호(名號)를 정하려는 것이 어찌 빠르다고 하느냐? 작년 5월에 내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내가 언제 아들을 낳겠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미 잉태하고 계신데 남자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듣고서 스스로 기뻐하였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 내 마음에 믿는 바가 있게 되었다."

임금은 "고금이 같지 않아 국세(國勢)가 외롭고 위태하여 후사를 빨리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러 신하의 뜻이 어떠한가를 다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호 결정을 다시 재촉했다. 신하들은 여전히 성급한 원호 결정을 반대했다.

이에 임금은 "책봉은 5세가 되기를 기다림이 마땅하나, 나라 상황이 외롭고 위태한 데다 강국들이 이웃에 있어 종사(宗社)의 큰 계획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러니 왕자의 명호를 정하되 해당 관청이 거행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임금의 결정에 남용익이 이렇게 아뢰었다.

"왕자의 명호를 정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라 창졸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여러 대신과 2품 이상에게 널리 의논하셔서 처리하소서."

임금은 이에 "큰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용익은 이에 대해 재차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숙종은 남용익을 무거운 죄로 처벌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최규서가 이러한 처벌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달 15일 원자(元子)의 정호(定號)가 결정되어 종묘사직에 고하였다. 그리고 당일에 숙종은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삼았다. 이즈음 "장씨에 대한 임금의 총애가 날로 성하였는데,

이항(李杭)과 장희재(張希載)가 민암(閔黯)·민종도(閔宗道)·이의징(李義徵) 등과 연락하고 모의하여 못하는 일이 없었다."(『숙종실록 20, 숙종 15년 1월 15일』) 『숙종실록』의 이날 기록 말미에 사관은 '국가의 화가 장차 조석(朝夕)에 있어,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떨었다.' 라고 적어 넣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궁중을 뒤덮고 있었다는 것이다.
2주쯤 지난 2월 1일(숙종 15년), 시골에서 원자 명호 결정에 대해서 들을 봉조하 송시열이 급히 상소문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초에 지금의 영의정 김수흥이 글을 급히 저에게 보내어 알리기를, '후궁(後宮)에 왕자의 경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대개 일전에 항상 같이 근심하던 일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쇠약하여 정신이 혼몽하고 귀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절로 기쁨에 넘쳐 입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듣건대, 여러 신하 가운데에서 위호(位號)가 너무 이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철종(哲宗)은 열 살인데도, 번왕(藩王)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神宗)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왕자의 명호를 서두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임금은 이러한 반대의견을 듣고 대노하여 "아! 내 나이 30에 비로소 한 아들을 두었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이 의탁할 바가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 신하가 된 자로서 진실로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있다면, 황명(皇明)의 고사를 이끌어대어 곧바로 나라의 근본을 일찍이 세우기를 청했어야 마땅한데, 송시열의 상소에는 불만의 뜻이 나타나 있다. (철종이) 열 살이 되도록 번왕에 있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병이 나자 비로소 태자 책봉했다는 말이 있으니, 그 뜻을 조작하고 꾸민 것이 더욱 위험하도다. …… (송시열을) 잡아다 엄중히 국문(鞫問)하여 정죄하라."라고 일갈하였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송시열 본인이 나서서 왕자의 명호를 서둘러야 마땅함에도 이미 정해진 왕자의 명호에 불만을 드러내니 불쾌하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송시열을 변호하기도 하였으나 소용없었다. 숙종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을 넘어 송시열을 '국문'하라고 하였다. '국문(鞫問)'이란 고문, 즉 형구를 사용하여 심문하는 것이다. 중죄인을 심문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금의 명령이 특별히 필요한 처벌이다. 송시열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에게 반역죄를 물으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9년간 집권한 서인 측 노론은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남인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었다. 노론 측 많은 관료들은 사직하거나 파직당하고 교체되었다. 중요 인물들은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1689년, 숙종 15년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기사환국'이라 한다.